

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안

□ 제정이유

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□ 주요골자

- 청소년 통행금지구역·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및 대상을 정함(안 제2조)
-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 시간을 정함(안 제3조)
-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·통행제한 구역의 지정절차를 규정함 (안 제4조)
-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·통행제한 구역의 지정해제 절차를 정함(안 제5조)
-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6조)
-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관리에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)

□ 검토의견

○ 법령직합성

- 동 조례안은 '99년 7월 1일부터 개정·시행되는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것임.

-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제25조(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지정)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통행금지·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
-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청소년보호법과 동법시행령, 시행규칙에 위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

○ 내용 타당성

-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.
- 이러한 입법취지가 실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도 및 단속 방법이 실효성 있게 수립되어야 하는데 선도 및 단속방법에 있어 중요한 감시초소 설치 및 초소 요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여부 및 재원 조달 방법(전액 자체부담 또는 국고,도비보조여부)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.